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저항이론 관련요인 분석

조 윤 오*

국 | 문 | 요 | 약

2010년 2월에 발생한 부산여중생 강간살인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GPS 전자감시제도가 확대 실시되었고, 착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이용한 강화된 수준의 보호관찰 감독이 실제 성폭력범죄자의 행동을 변화시켜 재범억제라는 긍정적 결과를 유발했는지, 혹은 처벌에 대한 반감을 유발시켜 성범죄자가 오히려 저항이나 반항심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부족한 상황이다. 처벌이 범죄자의 재범을 감소시킨다는 전통적인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과 달리 저항이론(defiance theory)은 강화된 처벌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오히려 분노감정을 일으켜 범죄자의 문제행동을 촉진·강화시킨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GPS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경험한 성폭력범죄자 18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국형 위치추적제도가 어떤 상황에서 범죄저항 또는 범죄억제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본다. Sherman(1993)이 저항이론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처벌 불공정성 인식, 처벌기관과의 애착부족, 낙인적 처벌인식, 수치심 부인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실제 범죄자 행동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전자발찌 부착을 경험한 성폭력범죄자를 상대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1)학력수준, (2)처벌 불공정성 인식, (3)전자발찌 수치심, (4)보호관찰관과의 애착이 전자발찌 고통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저항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부품절단 및 훼손충동 예측모델에서는 오로지 발찌부착에 대한 수치심 증가만 장치 훼손충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부착이 성범죄자의 범죄억제를 극대화시키는 제재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모델의 저항 요인이 향후 심도 있게 연구되고 그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보호관찰 지도·감독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위치추적 전자감독, 저항이론, 성폭력범죄자, 범죄억제, 보호관찰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I. 서론

2010년 2월에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납치, 강간살인사건으로 최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확대 실시되게 되었다. 2010년 3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으로써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제도 시행 3년 전까지 소급 적용되고 전자발찌 착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다(윤지영, 2010).

그러나 GPS를 활용한 강화된 수준의 보호관찰 감독과 제재방법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의 행동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요건 하에서 범죄감소가 발생할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형벌과 감독 수준이 증가하면 인간은 처벌고통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범죄행위를 자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me, 1988). 고전적 억제이론, 특히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과 관련된 많은 후속 연구들이 각 요건의 효과성찬반 논의를 제기해 왔다(Bowers & Pierce, 1980; Cochran & Chamlin, 2000; Paternoster, 1985; Nagin & Pogarsky, 2001).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체적인 믿음은 범죄행동에 대한 체포 및 처벌 두려움이 클수록 범죄자는 문제행동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Taxman & Piquero, 1998).

흥미로운 것은 일부 특정 범죄자에게는 증가된 수준의 처벌 및 제재수단이 충분한 범죄억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고질적인 범죄습관과 반복적인 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일부 범죄자에게는 2차 낙인 등의 문제로 집중보호관찰이나 전자감독과 같은 처벌강화가 항상 직접적으로 긍정적 효과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Lermert, 1967). 한 예로 일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처벌 및 단속 강화가 범죄억제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rewer et al., 1994). 오히려 강화된 처벌이 제재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저항심(defiance)을 불러일으켜 향후 더 심각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Freeman, Liopsis, & David, 2006). 즉, 처벌의 증가가 무조건적으로 범죄율 감소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저항이론에서는 처벌에 대한 일정한 의식, 즉 제재에 대한 공평성(fairness) 인식에 따라 범죄자가 문제행동을 억제할 수도 있고 혹은 증가시킬 수도 있는바 처벌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고 본다(Sherman, 1993).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억제이론과 저항이론의 논거를 바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성폭력범죄자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제재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어떠한 요인이 범죄자 행동 변화와 처벌인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GPS 방식의 보호관찰대상 범죄자 추적 시스템을 말한다(2008, 법무부). 전자발찌 착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목적을 정리하면, Sherman (1993)의 저항이론에서 제기했던 (1) 처벌 불공평성 인식, (2) 처벌 기관과의 애착실패, (3) 낙인적 형벌수단, (4) 처벌에 대한 수치심 부인이라는 네 가지 저항조건이 실제 전자발찌를 부착한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자에게 범죄 저항 효과를 일으켰는지 분석해보는 것이라고 하겠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 전자감시는 범죄자의 근본적인 범죄성향이나 왜곡된 성인식을 변화시키는 치료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시간(real time)으로 범죄자의 위치나 행동반경을 추적하는 강화된 보호관찰 보조 감독수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교정감독 수단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과 자유의지를 근거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범죄자의 합리성과 재범방지 효과가 극대화 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향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확대실시 성공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하겠다.

처벌의 저항심을 불러일으키는 강화된 제재수단은 상호 동의적 또는 회피적(mutualistic or retreatist) 범죄보다는 아동 납치, 강간, 성폭력과 같은 약취적, 경쟁적 범죄(predatory and competitive) 범죄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Felson, 1987). 따라서 GPS 전자장치가 아동대상 성폭력, 납치,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죄자에게 범죄억제가 아닌 범죄저항 효과를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 범죄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확대시행 전에 관련 요인들을 정비하는 교정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09년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범죄자 186명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이 형벌의 심각성과 전자장치 훼손·절단충동, 그리고 불법행동 회피 점수에 영향을 미쳤는지 세 모델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한다. 범죄저항을 일으키는

요인을 살펴보고 그 연구 결과가 향후 보다 객관적인 증거-중심의 지역사회 교정(evidence-based community correction)정책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억제이론은 형벌이 인간의 미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처벌이 신속하고, 엄격하고, 확실할수록 잠재적 범죄행동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한다(Freeman, Liossis, & David, 2006; Homel, 1988). 형벌의 엄격성(severity)과 확실성(certainty)에 있어서는 일부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연구 대상과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억제이론이 긍정적 결과를 보이는 것이 큰 흐름이라고 하겠다(Vito, Maahs, & Holmes, 2007). 또한 억제이론 연구 중 상대적으로 형벌의 신속성(celerity)에 대한 연구 양이 적고 다소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지만(Nagin & Pogarsky, 2001), 최근 신고전주의의 등장과 함께 범죄학에서 범죄자 행동변화와 범죄예방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핵심이론으로 여전히 억제이론은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원리를 억제이론에 적용하면, 24시간 발찌부착자의 위치를 GPS 시스템이 상시 추적한다는 점에서 처벌의 ‘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단시간 내에 위치추적 센터 담당자가 준수사항 위반 등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사회 감독보다 처벌의 ‘신속성’이 증가된 제재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접촉하는 일반 보호관찰 지도·감독 전략보다 더 집중적으로 실시간 성폭력범죄자를 모니터링 한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착용부과는 분명 범죄자의 심리적 억제를 강화하는 형벌의 ‘엄격성’이 증대된 보호관찰 감독기법이라 하겠다.

인간의 합리성을 근간으로 18세기 Jeremy Bentham과 Cesare Beccaria가 주장한 전통적 억제이론은 이와 같이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형벌 억제요건이 주어졌을 때 범죄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Taxman & Piquero, 1998). 억

제이론에는 크게 일반 억제(*general deterrence*)와 특별 억제(*specific deterrence*)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억제는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장래의 범죄행위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를 의미한다(Vito, Maahs, & Holmes, 2007). 일반인이 직접 처벌을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범죄자가 처벌되는 것을 보고 형벌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껴 자신의 범죄억제를 다짐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특별 억제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된 당사자가 형벌에 대한 고통 경험으로 장래에 범죄를 포기하게 되는 직접적 효과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경험한 성범죄자의 범죄저항 및 범죄억제 효과 요인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일반 억제보다는 특별 억제가 그 논의의 초점으로 맞춰져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특별 억제 효과에서도 동일한 형벌을 개인마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고 그 범죄억제 효과가 범죄자 성향(propensity)에 따라 다를 수 있다(Gottfredson & Hirschi, 1990; Piquero & Tibbetts, 1996; Nagin & Pogarsky, 2001). 먼저 범죄억제 효과를 감소시키는 특정 범죄자 성향으로는 현재의 욕구를 ‘지금, 당장(*hear and now orientation*)’ 충족시키고자 현실 지향적 욕구를 들 수 있다. Nagin과 Pogarsky(2001)는 개인별로 처벌 억제력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며, 욕구충족 지연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의 욕구를 참을 수 없는 사람일수록 과거 처벌에 대한 범죄억제 효과가 감소된다고 본 것이다.

범죄억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개인 성향으로는 낮은 자기 통제력(*low self-control*)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기 통제력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취업관계 등의 다양한 요인이 포함된다. 한 연구 결과, 절도사범과 성폭력사범에서 낮은 자기 통제력이 범죄억제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Nagin & Paternoster, 1994).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은 범죄자일수록 처벌 수치심에 대한 범죄억제 효과가 감소하고 동시에 범죄에 대한 주관적 기대쾌락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iquero & Tibbetts, 1996).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Pogarsky(2007)의 New Jersey 집중보호관찰 감독 프로그램(Intensive Supervision Program) 분석 연구에서는 오히려 낮은 자아 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강한 범죄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

다.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는 사람일수록 범죄에 대한 비용-편익 계산에 충실하게 되고 가장 최적의 상황인 아닌 한 처벌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범죄를 가급적 자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저항이론(Defiance Theory)

저항이론은 기본적으로 처벌에 대한 반응이 범죄억제가 아닌 범죄증가와 연결된다고 본다. 국가권력에 대한 부정과 저항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의도하지 않은 범죄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저항이론의 핵심이다.

1993년 Sherman이 발표한 "Defiance, deterrence, and irrelevance: A theory of the criminal sanction"에 따르면, 형벌의 증가가 반드시 범죄감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 처벌에 대한 주관적 느낌, 즉 공정성이나 합법성(fairness or legitimacy)에 대한 범죄자 개인의 인식이 범죄감소 또는 범죄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ouffard & Piquero, 2010). 다시 말해, 저항은 적절치 않은 제재수단에 대한 범죄자의 반감과 그로 인한 잠재적 범죄발생을 뜻하는 것이다(Sherman, 1993). 저항의 부정적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직접적 저항(direct)은 자신에게 형벌을 가한 집행 기관이나 체포 또는 판결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불법행동이다. 둘째, 간접적 저항(indirect)은 과도한 형벌에 대한 분노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대체 보복대상(displaced just deserts)에 대한 불법행동을 말한다. 범죄행위를 신고한 피해자일 수도 있고 전혀 피해자와 관련 없는 제 3의 잠재적 범죄피해자가 저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저항감은 처벌을 경험한 범죄자의 태도나 감정으로 표현된다. 저항이라는 태도가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저항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범죄자의 저항(defiance)을 정의하고 개념화하여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Sherman(1993)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상황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처벌을 경험한 당사자가 그 처벌 내용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불공평한 형벌이었다고 인식하는 경우(define a criminal sanction as unfair)에 처벌에 대한 분노, 저항심이 생긴다.

둘째, 범죄자가 자신에게 형벌을 부과한 국가기관에 대해 그 형벌부과 주체와 자신이 형벌집행 단계에서 소외되었다고 느꼈을 때(*poorly bonded to or alienated from the sanctioning agent*)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범죄자가 형벌이 순수하게 자신이 저지른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낙인을 찍고 불필요한 장기간의 고통을 주기 위해 부과된 상징적 처벌(*defines the sanction as stigmatizing and rejecting a person, not a lawbreaking act*)이라고 인식했을 때 저항이 발생한다.

넷째,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나 형벌에 대해 개인적 수치심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했을 때(*defines or refuses to acknowledge the shame the sanction has actually cause him to suffer*) 처벌에 대한 저항이 발생한다.

세부적으로 각각의 저항 발생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 형벌의 공정성(*fairness*)은 위치추적 성폭력범죄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특정 형벌이 합법적이고 공평하다고 느꼈을 때 그 형벌규정에 순응(*compliance*)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법 규정과 형벌내용 과정은 공정하게 규정·집행되어야 한다(Tyler, 1990). 만약, 성폭력범죄자가 법원 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과 받은 처벌내용(전자발찌 착용 포함)이 너무 가혹하거나 극도로 불공평한 형벌이라고 느끼게 되면 위치추적 전자감시 준수사항에 불응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형벌 내용 자체에 대한 불신이 위치추적 준수사항 위반 및 지도 불응, 전자장치 절단 및 훼손행동 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 실제 형사절차 상의 공정성에 따라 시민의 법집행 기관에 대한 신뢰와 순응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yler, 1994).

둘째, 저항이론의 두 번째 요건인 형벌부과 기관과의 소외(*alienation*)는 GPS 전자감독을 운영하는 담당 보호관찰관과 발찌 부착자와의 긴밀한 관계 효과로 요약될 수 있다. 위치추적을 감독하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대상 범죄자의 기본욕구나 발찌 착용과 관련된 문제점 및 사회복귀 상황 등을 자세히 알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감독 대상으로만 취급받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만이 제기될 수 있고 불공평한 형벌에 대한 분노감정은 극대화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범죄자를 실무에서 직접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이 범죄자 개개인의 상황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긴밀한 애착관

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성폭력범죄자가 처벌 내용 자체에서 느낀 불공평성(unfairness) 인식은 감소될 수 있다(Sherman, 1993; Scheff & Retzinger, 1991).

셋째, 범죄자가 형벌을 낙인적 제재수단으로 인식하면 부정적인 저항감이 발생하여 오히려 범죄증가가 생길 수 있다는 가정은 형벌 집행과정 상의 불합리성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성폭력범죄자가 자신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일종의 “꼬리표 달기”와 같은 낙인으로 인식했을 때 부정적 저항 감정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에서 처벌에 대한 효과는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과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이 대립하며 어느 한쪽이 우세인 것처럼 다소 양극화되어 발전되어 왔다(Weellford & Triplett, 1992). 낙인이론과 저항이론 모두 발달 범죄학 성격을 갖고 있고 동일하게 1차적 비행(primary deviance)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두 이론의 차이점은 저항이론이 낙인이론이 간과한 형벌에 대한 사후 감정 및 태도 부분을 저항 요건으로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Bouffard & Piquero, 2010)

자신의 형벌이 불법행위에 상응한 타당한 처벌이 아니라 일종의 “마녀사냥”과 같은 불합리한 처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범죄 저항심은 증가할 수 있다. 2008년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자감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제도 시행 초기의 성범죄자라든가, 혹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기간 확대로 자신이 받게 된 형벌이 기존보다 과하다고 생각하게 된 범죄자는 분명 전자감시에 대한 저항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넷째, 개인적 수치심을 부인할 때 저항이 발생한다는 저항이론의 마지막 가정은 Braithwaite(1989)의 낙인적 수치심(stigmatic shaming)과 관련이 깊다. 범죄자에게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낙인적 수치심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명확한 수준의 제재수단이 내려지면 보다 건강한 형태의 재통합적 수치심(re-integrative shaming)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곧 범칙억제와 효과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자신의 형벌 내용을 합법적이고 상당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곧 정서적 수치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비록 형벌 내용이 고통스럽고 다소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가 형벌 내용이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재통합적 수치심을 느껴 범죄저항보다는 범칙억제 효과가 발생하

게 되는 것이다(Braithwaite, 1989).

3. 관련 연구

형벌로 인한 범죄 저항 및 범죄증가 관련 연구 결과를 논의하기 전에, 형벌에 대한 해석은 개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처벌 경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연령 측면에서 형벌의 효과를 살펴보면,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보다 처벌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Sherman, 1993). 실제 네덜란드에서 지하철 개표 감독을 강화했을 때 실제 연령별로 그 잠재적 범죄억제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감독강화 프로그램에 특별한 행동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감독강화에 무단 지하철 승차 시도를 포기하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Van Anel, 1989).

저항 발생 요건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처벌 불합리성 인식이 증가할 때 실제 장래 범죄행동 발생 가능성 역시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aternoster & Piquero, 1995). 청소년인 경우, 약물사용으로 체포되어 처벌받게 되었을 때 형벌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극대화되는데 이것은 보통 청소년 사건이 심각한 수준의 형벌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약물범죄로 처벌을 받은 청소년은 석방 이후 또 다른 비행행위와 범죄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Piquero & Paternoster, 1998). 또한 미국에서 소수집단 출신의 피의자가 자신이 백인 주류 집단에 의해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고 인식하게 되면, 그 처벌내용에 불응할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Belvedere, Worrall, & Tibbetts, 2005).

저항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형벌부과 기관과의 애착” 관련 연구과를 살펴보면,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신뢰중심의 순응(trust-based compliance)이 전자감시 대상자에게 더 활발히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Nellis, 2004). Hucklesby(2009)는 Nellis(2004)의 주장을 발전시켜 전자감시대상자의 순응행동이 개인의 긍정적 동기와 처벌절차에 대한 공정성 인식, 그리고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들과의 애착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밝혀냈다. 즉, 전자감시를 받

고 있는 범죄자가 자신의 전자감독을 책임지는 담당자와의 관계 외에도 가까운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 전자감시 준수사항에 더 적극적으로 순응하게 된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Ⅲ. 연구 설계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성폭력범죄자로 2009년 4월 20일부터 2009년 12월 15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지역사회에서 전자발찌 장치를 부착한 보호관찰대상자 186명이다.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지소 포함)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경험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각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공식적으로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작성되었고, 성폭력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성폭력범죄자가 설문으로 인해 보호관찰 지도·감독상의 사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마지막 순간에 설문을 실시하였고, 참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설문 참가자에 대한 감독기관 담당자의 영향력을 가능한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원래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 효과성 연구” 조사지에는 일반적인 전자발찌 부착 경험 관련 문항 외에도 성폭력범죄자의 성역할 인식 문항과 과거 동종(또는 이종) 범죄전과 경력, 가족(또는 친구)들과의 관계변화 등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 목적에 상응하도록 부가적으로 설문지 내에 재판 내용에 대한 불공정성, 발찌 부착 외출 시의 수치심 정도, 발찌부착 기간에 대한 불만 정도,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문항이 만들어졌고, 각 문항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4월 15일부터 약 열흘 동안 성폭력범죄자 5인에게 개별 전화 상담을 실시, 이를 통해 문항 내용을 수정·보충하는 예비과정을 거쳤다.

2. 연구 설계 및 변수설정

가. 연구 설계

위치추적 전자감시 집행의 어떤 상황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처벌 저항 효과(또는 범죄억제)를 발생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범죄저항 또는 억제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하나의 단독 변수를 사용하기보다는 GPS 전자장치제도 효과를 폭넓게 설명해주는 다면적 종속변수(multi-faceted outcomes) 세 개의 모델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전자발찌를 착용한 186명의 성폭력범죄자에게 어떠한 요인들이 (1)처벌의 주관적 고통인식을 증가시켰는지 조사하고, 다시 (2)그 요인들이 불법행동을 감소시키려는 범죄억제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재검토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검토한 예측요인들이 (3)전자발찌 부품을 자르거나 훼손하려는 저항 충동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해본다.

특정 교정프로그램의 범죄억제 또는 저항효과를 측정하는 종속변수에는 보통 재범여부, 경고장 발송횟수, 보호관찰 취소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2008년 9월에 시행된 우리나라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는 제도 도입 후 이제 1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그 재범률 산정을 위한 최소 범죄부화 기간(crime breeding-period)도 충분히 지나지 않았다고 하겠다(조윤오, 2009). 또한 경고장 발부와 그로 인한 집행유예 및 가석방 취소여부도 제도 시행 초기라 공식적으로 엄격히 발부·집행되지 않고 있다. 사소한 준수사항 위반은 비공식적 구두경고나 전화확인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제도 시행 초기의 GPS 탐지장치의 정확성 문제 등으로 규정위반 판단에 대한 정확성이 아직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¹⁾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는 객관적인 재범률이나 경고장 발부 횟수가 아닌 주

1) 제도 시행 초기라는 실무적 이유 외에도 무조건적으로 사소한 규정위반에도 공식적으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기계적으로 보호관찰 취소를 요청하는 것은 형사사법 망의 확대와 범죄자 낙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적 근거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하겠다. GPS 탐지기능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 담당자의 탄력적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조윤오, 2010).

관적인 범죄자 자기보고에 해당하는 (1)형벌 고통 정도와 (2)불법행동 회피 정도, (3)전자장치 훼손 충동을 세 가지 결과변수로 사용한다.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서 유죄확정 여부나 체포여부는 분명 프로그램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변수이나, 실제 상황에서는 경찰에 밝혀지지 않은 암수범죄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어 GPS 전자장치의 효과를 결정짓는 요인변수로 부착자 개인이 보호관찰 종료일에 직접 밝힌 자기보고식 데이터를 사용한다.²⁾

나. 변수설정

위에서 언급한 모델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문지 내 문항과 연결하여 설명하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Sherman(1993)이 저항이론에서 언급한 네 가지 저항 조건이 종속변수인 (1)발찌착용 고통점수와 (2)불법행동 회피정도, (3)전자장치 절단 훼손충동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한 것으로 각각의 변수들은 직접설문 문항을 통해 얻은 것이다. 세 가지 종속변수 중 발찌착용 고통점수는 다른 두 문항과 달리 응답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을 묻고 있어 범죄억제나 저항 여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합리적 판단을 기준으로 보통 처벌고통이 크다고 느껴야만 억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므로 발찌착용 고통점수는 중요한 처벌 효과 대표변수가 된다고 하겠다.

먼저 종속변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발찌착용 고통점수는 문항에서 처벌의 심각성 및 가혹성 인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써 1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과하도록 했다. 점수가 클수록 범죄자가 GPS 추적 장치가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식했음을 뜻한다. 둘째, 불법행동 회피정도는 “발찌 착용 기간 동안 가급적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노력하였다”라는 문항으로 답변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했다. 비록 발찌착용 고통점수와 같은 연속변수는 아니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 편의상

2) 법무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 기준, 지난 1년 6개월 동안 500여명이 넘는 전체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단 1명만이 동종 성범죄를 저질렀고 발찌장치 훼손, 절단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체포된 자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지영, 2010) 공식적인 객관적 데이터만으로는 저항 효과와 관련된 특정 상황 요인을 통계적으로 밝히는데 한계가 있는바 현재 상황에서는 자기보고식 데이터를 활용한 저항 요인 회귀분석을 실시, 이를 근거로 향후 충분한 재범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었을 때 공식데이터를 이용한 추가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서열척도에 해당하는 5점 척도 답변(“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을 등간척도로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전자발찌 부품을 자르거나 훼손하는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라는 문항을 또 다른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역시 5점 척도로 물어 각각의 답변을 점수화하여 통계분석에 활용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첫째, 재판내용의 불공정성은 설문지 내에서 “법원 재판단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만들어진 다. 본 문항에 대해서는 범주형에 해당하는 “그렇다”, “아니다” 두 가지 옵션만 제공한다. 두 번째 요건인 발찌부착 수치심 정도에서는 “발찌를 부착하고 외출하는 경우 항상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문항을 주고 5점 척도로 답하게 한다. 셋째, 처벌의 낙인성에서는 범죄자가 주관적으로 얼마나 자신의 형벌을 낙인적 제재수단으로 인식했느냐를 측정한다. 프로그램 운영 중에 보호관찰관에 의해 부착명령 가해제 등의 조기 종료가 가능하므로 보호관찰 기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느낀 형벌운영에 대한 불만정족 정도를 조사할 수 있다. 5점 척도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발찌착용 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느낀 범죄자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형벌이 범죄행위 자체가 아닌 범죄자 개인을 비난하는 낙인적 처사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독립변수는 형벌을 부과하는 국가기관과의 소외정도를 말한다. 즉, 범죄자와 형벌 부과 담당자의 애착부족이 저항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가 자신의 담당 보호관찰관이 가족상황, 병력, 일상을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면 비교적 담당자와의 소외감은 감소되고 애착 정도가 증대되어 저항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치 절단/훼손 충동이 재범행동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방법론상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 충동이 보호관찰 기간 내의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행위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해 다시 범죄자가 재구금될 수 있는 바 장치 절단, 훼손충동도 전자감시 효과성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저항 변수라고 하겠다. “불법행동 회피정도” 모델이 독립변수와 음(-)의 관계를 가지면 저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절단/훼손 충동” 모델은 본 연구에서 저항을 측정하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1〉 기본변수의 조작적 정의

유형	변 수	문 항
종속 변수	Model 1 “전자발찌 고통 점수”	전자발찌의 가혹성 정도에 1점부터 10점을 준다면?
	Model 2 “불법행동 회피정도”	전자발찌 착용기간 동안 가급적 불법적인 행동을 피하려고 하였다.
	Model 3 “전자장치 절단/훼손 충동”	전자발찌 부품을 자르거나 훼손하는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독립 변수	재판의 불공평성 인식	귀하는 본 사건의 재판 단계에서 공평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yes/no)
	처벌의 수치심 정도	발찌를 부착하고 외출하는 경우 항상 수치심을 느꼈다
	처벌의 낙인 정도	내가 받은 발찌착용 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한다.
	담당관과의 애착정도	보호관찰관은 나의 일상, 직장, 병력, 가족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다수의 성폭력범죄자가 20대와 30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70.4%가 20-30대에 속하고 40대는 18.3%에 해당한다. 전자감시 종료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전체 21.5%가 중졸 이하(초졸, 중퇴 포함)의 낮은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7.8%가 고등학교 중퇴 또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자 중 대학 이상의 학력도 56명으로 전체의 30.1%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성폭력범죄자 중 고학력을 가진 범죄자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 대상자 186명 중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직장생활(비정규직, 파트타임 모두 포함)을 해왔던 대상자는 97명으로 전체의 52.2%에 해당하였다. 반면 직장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전자감시만 받았던 대상자는 87명으로 전체의 46.8%에 해당하였다.

〈표 2〉 전자감시 종료자에 대한 기술적 분석

변 수	내 용	위치추적 전자감시 (N=186)	
		빈도비율(%)	
연 령 대	10대	4	2,2%
	20대	59	31,7%
	30대	72	38,7%
	40대	34	18,3%
	50대	12	6,5%
	60대	2	1,1%
	결측값	3	1,6%
	합계	186	100%
학력수준	중졸 (중퇴포함)	40	21,5%
	고졸 (고퇴포함)	89	47,8%
	대학 이상	56	30,1%
	결측값	1	0,5%
	합계	186	100%
직 업	재직	97	52,2%
	무직	87	46,8%
동거가족	혼자	32	17,2%
	배우자	21	11,3%
	부모님	97	52,2%
	친척	7	3,8%
	자녀	3	1,6%
	친구	4	2,2%
	기타	21	11,3%
	합계	186	100%
전자발찌 부착기간	3개월 미만	57	30,6%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88	47,3%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34	18,3%
	결측값	7	3,8%
	합계	186	100%
성폭력 전력	있다	24	12,9%
	없다	161	86,6%
	결측값	1	0,5%
	합계	186	100%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3개월 미만의 짧은 부착기간을 받는 경우가 전체의 30.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의 부착기간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186명 중 88명(47.3%)이 여기에 경우에 해당하였다. 3개월 미만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의 대다수 가석방 보호관찰대상자가 6개월 미만의 비교적 짧은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부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저항 조건변수 특성

단순 빈도분석을 통해 범죄자에게 저항을 일으키는 관련 요건들을 살펴보면, 제재수단에 대한 수치심 정도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가 20명으로 전체의 10.7%에 이름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체 참가자의 62.9%가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는 긍정적 태도를 보여 일반적으로 위치추적 전자감시 하에 있는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에 대해 감정적으로 큰 수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형벌내용에 대한 낙인적 처벌인식 정도를 발찌부착 기간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을 보인 범죄자가 68명으로 전체의 36.5%에 해당하였다. 절반에 가까운 46.2%가 “보통이다”라고 답했는데 초기 가석방된 발찌 피부착자들이 가석방되면서 교도소 잔형기에 해당하는 3개월 또는 6개월 미만의 비교적 짧은 전자감시 기간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자발찌 제재수단을 부과하는 국가기관, 즉 보호관찰 담당자와의 애착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성폭력범죄자가 감시 담당자와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해 전체의 75.3%가 보호관찰관과의 애착형성에 긍정적 답변을 보였고 단 10명(5.4%)만이 부정적인 관계형성 태도를 보였다. 넷째, 재판내용 공정성(fairness)에 대해 알아본 결과, 참가자의 주관적 인식이 대부분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사건의 재판단계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60.8%(113명)가 “그렇다”라고 말했고 나머지 37.1%(69명)가 “아니다”라는 부정적 답변을 보였다.

〈표 3〉 저항(defiance) 조건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변수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처벌의 수치심 정도	발찌를 부착하고 외출할 때 수치심이 들었다.	3 (1.6)	17 (9.1)	47 (25.3)	53 (28.5)	64 (34.4)
형벌의 낙인성 인식	내가 받은 발찌착용 부착기간이 너무 길었다.	14 (7.5)	18 (9.7)	86 (46.2)	33 (17.7)	35 (18.8)
보호관찰 애착관계	담당 보호관찰관은 나의 일상, 직장, 가족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	4 (2.2)	6 (3.2)	36 (19.4)	88 (47.3)	52 (28.0)
재판의 불공평성 인식	나는 본 사건 재판단계에서 공평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예(yes=1)		113(60.8%)		
		아니오(no=2)		69(37.1%)		
		결측		4(2.2%)		
		합계		186(100.0%)		

3. 전자감시 억제효과와 저항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가. 전자감시 억제효과 다중회귀 모델

성폭력범죄자가 GPS 전자감시를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따라 발찌착용 이후, 범죄 억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범죄저항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범죄억제와 범죄저항은 결국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범죄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시에 범죄저항 요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다. 범죄저항 요인을 살펴보기 전에 처벌 고통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모델 1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1)성폭력범죄자의 학력수준, (2)판결내용의 불공정성 인식, (3)처벌에 대한 수치심 정도, (4)감독자와의 애착관계 네 가지가 발찌착용 고통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과 같이 발찌착용 고통 모델은 분산의 모델 설명력이 12%(수정된 R²)로 통계적으로 ANOVA 분석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8.164)=3.95, p<0.05).

각각의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해석해 보면,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속하는 범죄자의 학력 수준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처벌의 고통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성폭력범죄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GPS 전자감시 제도에 대한 주관적 처벌 고통이 증대되는 것이다.

둘째,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재판 불공평성 인식 점수가 회귀계수(slope coefficient) 0.97로 자신의 재판이 불공평했다고 인식하는 범죄자일수록 발찌착용에 대한 고통정도도 증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처벌수단이 가혹해지거나, 경고장을 받아 발찌착용에 대한 주관적 고통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판결 결과에 대한 만족도나 불공평성 인식에 따라 고통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벌에 대한 수치심 정도 변수를 살펴보면, 발찌를 차고 외출할 때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범죄자일수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경험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처벌 수치심 회귀계수 베타($\beta=0.48, p<0.01$)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 수치심 정도에 비례하여 범죄자의 주관적 처벌 인식 점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4〉 전자감시 억제효과 다중회귀 모델

	범죄 억제효과 (Crime Deterrent Effect)					
	1st model (발찌착용 고통정도)			2nd model (불법행동 회피노력)		
	Coefficient	SE	t ratio	Coefficient	SE	t ratio
상수(β_{00})	1.09	2.10	0.52	1.89	0.84	2.26
나이(β_{01})	-0.02	0.02	-0.95	-0.01	0.01	-0.60
학력수준(β_{02})	0.45	0.22	2.04*	0.22	0.09	2.44*
동거여부(β_{03})	-0.68	0.50	-1.35	0.18	0.20	0.89
경고 유무(β_{04})	0.11	0.37	0.29	-0.04	0.15	-0.27
재판 불공평성 인식(β_{05})	0.97	0.39	2.49*	-0.14	0.16	-0.91
처벌 수치심 정도(β_{06})	0.48	0.18	2.69**	0.18	0.07	2.51*
낙인적 처벌 기간(β_{07})	0.12	0.09	1.28	0.01	0.03	0.28

	범죄 억제효과 (Crime Deterrent Effect)					
	1st model (발찌착용 고통정도)			2nd model (불법행동 회피노력)		
	Coefficient	SE	t ratio	Coefficient	SE	t ratio
보호관찰관 애착(β_{08})	0.57	0.21	2.71**	0.22	0.09	2.56*
수정된 R2	0.12(12%)			0.07(7%)		
ANOVA	F(8,164)=3.95, p<0.05			F(8,167)=2.64, p<0.05		

Note: *p<0.05, **p<0.01

a. 종속변수(1st model): 전자발찌 가혹성 정도에 점수를 1점에서 10점까지 준다면?

b. 종속변수(2nd model): 발찌착용 기간 동안 가급적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begin{aligned}\pi_{0i} &= \beta_{00} + \beta_{01}(age)_i + \beta_{02}(education)_i + \beta_{03}(cohabitation)_i + \beta_{04}(warningticket)_i \\ &\quad + \beta_{05}(PERCEIVED UNFARINESS)_i + \beta_{06}(SHAMINEACCEPTANCE)_i \\ &\quad + \beta_{07}(STIGMATIZING SANCTION)_i + \beta_{08}(BONDED TO PROBATIONER OFFICER) + \gamma_0 \\ \pi_{1i} &= \beta_{10} + \beta_{11}(age)_i + \beta_{12}(education)_i + \beta_{13}(cohabitation)_i + \beta_{14}(warningticket)_i \\ &\quad + \beta_{15}(PERCEIVED UNFARINESS)_i + \beta_{16}(SHAMINEACCEPTANCE)_i \\ &\quad + \beta_{17}(STIGMATIZING SANCTION)_i + \beta_{18}(BONDED TO PROBATIONER OFFICER) + \gamma_{1i}\end{aligned}$$

마지막으로 보호관찰관과의 애착관계를 살펴보면, 감독 담당자와 범죄자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대상자는 전자발찌 착용 경험을 고통스럽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이 형성되어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믿음을 갖고 있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자주 보호관찰관과 접촉해야만 하고, 보호관찰관이 집이나 학교 등으로 잦은 현지방문을 실시하기 때문에 범죄자는 그로 인해 위치추적을 활용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처분이 전반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모델인 “불법행동 회피” 다중회귀 분석을 살펴보면, 분산의 모델 설명력은 약 7%로이고 ANOVA 분산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모델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은 (1)성폭력범죄자의 학력수준, (2)발찌착용의 수치심 정도, (3)보호관찰관과의 애착정도 세 가지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형벌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잃을 것이 많아 처벌 자체에 대한 주관적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 발찌착용 자체에 대한 감정적 수치심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처벌에 대한 수치심 거부(refusal to shaming)가 형벌에 대한 저항감을 불러

일으킨다는 Sherman(1993)의 주장과 같이,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저항감이 적게 발생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관과의 애착형성”이 불법행동 회피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두 번째 예측변수의 설명은 저항이론에서 말하는 “처벌부과 기관과의 소외”가 저항을 증가시킨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비록 잦은 보호관찰관과의 접촉이 범죄자에게 고통스런 처벌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발찌 피부착자로 하여금 불법행동을 피하게 만드는 긍정적 환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나. 전자감시 저항효과 다중회귀 모델

저항효과 모델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결과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모델 독립변수에서 오직 “발찌부착 수치심”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저항효과 모델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저항효과 모델의 독립변수 분산 설명력이 5%(수정된 $R^2=0.05$)이고 ANOVA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F(8.167)=2.12, p<0.05$).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처벌에 대한 감정적 수치심이 커질수록 전자장치 훼손 등에 대한 반감 충동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beta=0.20, p<0.05$).

전자장치 훼손 모델에서는 재판 판결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나 발찌부착 기간에 대한 낙인성 인식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관찰관과의 애착정도 역시 비록 방향성에서는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었으나 ($\beta=-0.21$), 종속변수와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즉, 전자장치 부품절단, 장치 훼손 등의 심각한 준수사항 위반행동은 저항이론에서 언급한 네 가지 요건과는 관계없이 없는 것으로 본 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난 것이다.

〈표 5〉 전자감시 저항효과 다중회귀 모델

	범죄저항 효과(Crime Defiance Effect)		
	3rd model(부품절단 및 훼손)		
	Coefficient	SE	t ratio
상수(β_{00})	-0.31	1.15	-0.27

	범죄저항 효과(Crime Defiance Effect)		
	3rd model(부품절단 및 훼손)		
	Coefficient	SE	t ratio
나이(β_{01})	0,02	0,01	1,54
학력수준(β_{02})	0,21	0,12	1,75
동거여부(β_{03})	0,42	0,27	1,53
경고 유무(β_{04})	0,21	0,20	1,04
재판 불공평성 인식(β_{05})	0,13	0,05	0,62
처벌 수치심 정도(β_{05})	0,20	0,10	2,01*
낙인적 처벌 기간(β_{07})	0,04	0,05	0,75
보호관찰관 애착(β_{08})	-0,21	0,12	-1,83
수정된 R2	0,05(5%)		
ANOVA	F(8,167)=2,12, p<0,05		

Note: *p<0,05, **p<0,01

종속변수(3rd model): 전자장치 부품을 자르거나 훼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pi_{2i} = \beta_{20} + \beta_{21}(age)_i + \beta_{22}(education)_i + \beta_{23}(cohabitation)_i + \beta_{24}(warningticket)_i \\ + \beta_{25}(PERCEIVED UNFAIRNESS)_i + \beta_{26}(SHAMINE ACCEPTANCE)_i \\ + \beta_{27}(STIGMATIZING SANCTION)_i + \beta_{28}(BONDED TO PROBATIONER OFFICER) + \gamma_{2i}$$

흥미로운 것은 발찌 착용에 대한 수치심이 저항모델에서도 여전히 결과변수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 예측변수로 나타나 오히려 세 번째 모델에서는 저항이론의 일반 설명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처벌에 대한 주관적 수치심이 클수록 준수사항 위반 충동이 증가한다는 것은 또한 위의 두 번째 “불법행동 회피노력” 모델과도 상반되는 결과라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Sherman(1993)이 저항이론 당시 활용했던 1989년 Braithwaite의 수치심 이론(shaming theory)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범죄자가 느끼는 수치심에는 재통합적 수치심(reintegrative shaming)외에도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부정적 기능의 낙인적 수치심(stigmatizing shaming)이 존재하기 때문이다(Sherman, 1993; Braithwaite, 1989).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외출할 때 어느 정도 수치심을 느꼈는가?” 라는 다소 가치중립적인 설문을 실시했으나, 이를 보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범죄자가 느끼는 수치심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낙인적 수치심과 재통합적 수치심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여 그 효과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발찌부착자(N=186명)들을 상대로 실제로 어떤 요건에서 성폭력범죄자들이 범죄저항(또는 범죄억제) 효과를 보였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비록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재범이나 준수사항 위반행동과 같은 명백한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하지는 못했으나, GPS 전자장치를 경험한 성폭력범죄자의 자기보고식(self-reported) 설문을 통해 판결 불공평성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을 보호관이 종료되는 순간에 조사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발찌 착용고통정도”와 “불법행동을 회피 노력”, “장치훼손 및 절단 충동”이라는 범죄자의 주관적 태도 요인만을 조사하여 실제 객관적 저항행동과 그 결과가 다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전자발찌를 경험한 성폭력범죄자의 솔직한 의견을 최초로 조사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연구 의의가 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회귀모델(발찌착용 고통정도)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1)학력수준, (2)재판 결과에 대한 불공평성 인식, (3)처벌 수치심, (4)보호관찰관과의 애착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벌을 경험한 대상자가 제제수단 자체를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범죄억제 효과는 발생하기 어렵다. 어느 정도 발찌착용 경험을 일반 보호관찰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제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어 범죄억제(또는 범죄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두 번째 모델(불법행동 회피노력)과 첫 번째 모델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각각의 예측변수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자발찌 부과명령이 주관적 처벌고통으로 여겨졌고 그것이 발찌착용 기간 동안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하는 의지와 어느 정도 연결되었음을 유추케 한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재판 불공평성 인식 변수를 제외한 (1)학력수준, (2)처벌 수치심, (3)보호관찰관과의 애착형

성이 불법행동 회피노력을 설명해 주는 유의미한 독립변수로 확인되었다.

부연 설명하면, 재판 결과가 불공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전자발찌 부착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은 사실이나,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는 판결 불만족과 상관없이 제재수단 과정에서 경험하는 수치심이나 보호관찰관과의 애착 정도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즉, 자신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담당 보호관찰관과 애착 형성이 제대로 형성된 사람일수록 발찌착용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학력이 높은 경우에도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사회나 가정에서 잃을 것이 많다고 할 수 있어 전자발찌 부과명령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증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GPS 전자장치가 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는 모니터링 기능만 있어서는 절대 긍정적인 범죄자 행동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발찌를 차고 외출하는 것에 성폭력범죄자가 어느 정도 감정적 수치심을 느껴야만 범죄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담당 보호관찰관과 발찌부착자가 개인적으로 긴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해야만 범죄자가 발찌착용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GPS 전자감시제도의 저항효과 요인을 보여주는 세 번째 모델(부품훼손 및 절단)에서는, 발찌부착에 대한 수치심이 클수록 전자발찌를 자르거나 장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적으로 두 번째 모델(불법행동 회피)과 세 번째 모델(저항효과)이 동시에 “처벌 수치심 정도”변수에서 양(+)의 회귀계수 β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되는 결과변수를 가진 모델에서 동일한 변수가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저항이론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Braithwaite(1989)가 말한 ‘재통합적 수치심’이나 혹은 ‘낙인적 수치심’이나에 따라 증가된 수준의 처벌이 범죄억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혹은 범죄저항 기능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발찌를 착용하고 외출할 때 부정적 수치심을 극도로 많이 느끼는 대상자는 발찌를 끊고 도주하려는 충동이 그렇지 않은 범죄자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바 보호관찰 지도 현장에서 범죄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보다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성범죄자가 끼친 해를 인식시키고 가해자가 이를 진

심으로 누우치도록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했을 때에만 재통합적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다. 수치심(shaming)은 두 번째 모델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를 억제하는 긍정적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판결내용의 공정성 인식 증대를 위한 범죄자 상담과 함께 적절한 재통합적 수치심 향상을 위한 개별화된 보호관찰 치료·지도기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발판으로 전자발찌 종료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범죄부화 기간을 보낸 후 범죄경력조회를 통한 객관적 중단연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범죄자가 느끼는 주관적 수치심(shaming)에 대한 세분화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어떤 유형의 수치심 감정이 실증적으로 전자발찌의 범죄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지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법무부, (2008).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 시행 안내, 법무부.
- 법무부, (2009).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시스템 홍보자료, 법무부.
- 윤지영, (2010).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조운오, (2009).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범죄억제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4), 200-229.
- 조운오, (201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연구, 2009 법무부 용역과제, 법무부.
- Belvedere, K., Worrall, J. L., & Tibbetts, Ss. G. (2005). Explaining suspect resistance in police-citizen encounters. *Criminal Justice Review*, 30, 30-44.
- Bouffard, L. A., & Piquero, N. L. (2010). Defiance theory and life course explanations of persistent offending. *Crime and Delinquency*, 56(2), 227-252.
- Bowers, W. J., & Pierce, G. L. (1980). Deterrence or brutalization: What is the effect of executions? *Crime and Delinquency*, 26, 353-383.
- Braithwaite, J. (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wer, R. D., Morris, P. D., Cole, T. B., Watkins, S., Patetta, M. J., & Popkin, C. (1994). The risk of dying in alcohol related automobile crashes among habitual drunk driver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1(8), 513-517.
- Cochran, J. K., & Chamlin, M. B. (2000). Deterrence and Brutalization: The dual effect of executions, *Justice Quarterly*, 17, 685-706.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Macmillan Publishing Co., New York, NY.
- Homel, R. J. (1988). *Policing and punishing the drinking driver. A study of specific and general deterrence*. New York: Springer-Verlag.

- Lemert, E. M. (1967).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Englewood Cliff, NJ: Prentice Hall.
- Nagin, D. S., & Paternoster, R. (1994). Personal capital and social control: the deterrence implications of a theory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riminal offending. *Criminology*, 32: 581-604.
- Nagin, D. S., & Pogarsky, G. (2001). Integrating celerity, impulsivity, and extralegal sanction threats into a model of general deterrence: theory and evidence. *Criminology*, 39: 404-430.
- Paternoster, R. (1985). Assessments of risk and behavioral experience: An exploratory study of change. *Criminology*, 23, 417-436.
- Paternoster, R., & Piquero, A. (1995). Reconceptualizing deterrence: An empirical test of personal and vicarious experienc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2, 251-286.
- Pogarsky, G. (2006). Deterrence and individual difference among convicted offenders. *J Quant Criminol*, 23, 59-74.
- Piquero, A. R., & Tibbetts, S. (1996). Specifying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low self-control and situational factors in offenders' decisions making: toward a more complete model of rational offending. *Justice Q*, 13: 481-510.
- Sherman, L. W. (1993). Defiance, deterrence, and irrelevance: a theory of the criminal sanc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4), 445-473.
- Taxman, F. S., & Piquero, A. (1998). On preventing drunk driving recidivism: an examination of rehabilitation and punishment approach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6 (2), 129-143.
- Tyler, T. R. (1990). Why people obey the law.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Tyler, T. R. (1994). Governing amid diversity: Can fair decision-making procedures bridge competing public interests and values? *Law and Society Review* 28:

701-722 .

- Tyler, T. R. (1994). Enhancing Police Legitimacy, *The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3: 84-99.
- Van Andel, H. (1989). Crime prevention that works: The case of public transport in the Netherland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9: 47-56.
- Vito, G. F., Maaha, J. R., & Holmes, R. M. (2007). *Criminology: theory, research, and policy*, 2nd edition,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Inc. U.S.A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Defiance for Sex Offenders under GPS Electronic Monitoring

Cho, Younoh*

The law governing electronic monitoring through GPS, which is called GPS Electronic Monitoring ACT for Specific Sex Offenders, was enacted in April 2007. Despite a lack of sufficient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GPS electronic monitoring,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attempted to apply the program widely in order to provide an immediate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public and stakeholder for punitive sanctions toward sexual criminals. However, there is a paucity of studi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supervision in South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specific conditions that may affect the defiance of GPS electronic monitoring for sex offenders. Unlike deterrence theory, defiance theory by Sherman(1993) assumes that punishment may be causing future crime in specific situations by causing the feelings of unjustness for the penalties. The current study conducts survey toward sex offenders(N=180), with experience of being on EM from 2009 April to December 2009.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the sample had stronger desire to cut their electronic anklet when they have personal shame about wearing the EM device. In addition, participants a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ir sanctions less severely as they accept that they were treated fairly in court compared to others. Furthermore,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education level, perceived fairness, feeling of shame, and bonds to probation officers are identifi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perceived severity of GPS

* Assistant Professor in Dongguk Univ-Seoul

electronic monitoring.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 findings is that predictors of all three models in the current study are applicable to supervision strategies of sex offenders who wear a tag fitted to the ankle by minimizing defiance effect.

❖ Key Words : GPS electronic monitoring, defiance, sex offenders, deterrence, probation